

(붙임 6.)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2015년 2월

목 차

1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 1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1
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2
한국어연수과정의 연장	2
입학 지원	2
장학금 지급	3
제출 서류	4
신입생 준비서류	5
보험 가입	5
숙소	5
항공료 지급	6
등록	7
수강	7
성적 보고	7
성적 관리	7
휴학 신청	8
복학 및 신고	8
일시출국 신고	8
일시출국 기간	9

재입국 신고	9
귀국 신고	9
연락처 등 변경 신고	10
장학기간	10
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10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11
장학생 자격포기 및 장학금 반환	12
경고	13
주의	13
중요사항의 결정	14
준용규정	14
재단 행사참석 의무	14
소감문 작성 의무	15
학사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15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연락처	17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연락처	17

2 각종 양식 / 18

각종양식(일시출국신청서, 휴학/복학신청서, 교환학생 신청서, 귀국항공료신청서 등)	18
--	----

3 국외 항공요금 지급 기준 / 26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	26
----------------------	----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제정 2010.12.14. 지침 제15호
개정 2012. 2.13. 지침 제21호
개정 2013. 1.21. 지침 제40호
개정 2014. 1.28. 지침 제50호
개정 2015. 2.26. 지침 제7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일정기간(8개월 이하)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가 각 과정(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13>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②장학생은 어학연수 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며, 동 시험에서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 한다.<개정 2013.1.21>

③어학연수 불참자도 반드시 TOPIK 3급 이상의 성적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2년 이내 TOPIK 성적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개정 2013.1.21>

제2조의1(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①장학생은 어학연수기간 동안 출석을 95%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13>

제2조의2(한국어연수과정의 연장) ①당해연도 선발 장학생이 9월학기, 혹은 익년도 3월학기 대학진학 실패시, 익년도 9월학기 진학 희망자에 한해 어학연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단, 익년도 3월부터 8월말까지 장학생 신분 유지 및 어학연수 비용은 지원되나, 생활비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장이 승인된 장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하며, 익년도 9월학기 대학 진학 실패시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 한국어연수과정 연장자가 등록금면제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등록금면제자 선정심의회, 후순위로 고려한다.<신설 2014.1.28>

제3조(입학 지원) ①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는 장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재단으로 기제출한 서류는 입학 등의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대학 입학 관련 정보는 장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각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후 입학절차 진행해야한다.

2. 장학생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학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선택시에는 등록금 면제 혜택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문에 명시된 대학이라도 지방캠퍼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학교, 의학, 치의학, 건축학 등 4년을 초과하는 학과는 제외될 수 있으며, 면제인원보다 합격인원이 많은 경우에도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면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3. 재단 장학생의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등록금 면제 대상을 선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은 먼저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면제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은 합격한 대학의 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2.2.13>
 4.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학생회비, 입학금 등)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 ②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후 수석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3.1.21>

제4조(장학금 지급) ①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어학연수과정 :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 ※ 어학연수 불참학생 및 어학연수 중도포기자는 생활비 지급 불가, 어학연수생의 일시출국으로 인한 생활비 차감은 제23조④에 의함.<신설 2012.2.13, 개정 2014.1.28>
 - 학부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4년간
 - 석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2년간
 - 박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3년간

- 석·박사 통합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대학별 수학년한 이내(단, 최대 4년간)
<신설 2015.2.26>
2. 지급시기 : 매월 5일
 3. 지급금액 : 월 90만원<개정 2012.2.13>
 4.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
 - ※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어학연수 위탁기관에서 지급
<신설 2012.2.13>
- ②최소소요경비는 최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첫 생활비 지급과 동시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3.1.21, 2014.1.28>
- ③논문 인쇄비(석·박사, 석·박사 통합과정)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 및 논문 제출자에 한해 1회 5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5.2.26>
1. 논문 인쇄비 지급 신청서 1부
 2. 논문 인쇄본 1부
- ④장학금의 지급 중지 : 제5조 및 6조에서 정한 개인별 서류의 미제출시 장학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5조(제출 서류)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

1. 입학 확정 시 : 입학이 확정된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합격증 원본 1부<개정 2012.2.13>
2. 매학기 종료 후
 - 가. 성적증명서 원본 1부(7월 20일 이전, 1월 20일 이전)<개정

2012.2.13>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9월 10일 이전, 3월 10일 이전, 선발년도부터 기재된 것)<개정 2012.2.13, 2013.1.21>

※ 일시출국자는 귀국 후 7일 이내 제출<신설 2012.2.13>

3. 휴학 후 재등록 시 : 재학증명서 1부

제6조(신입생 준비서류) ①신입 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입학 15일전까지 재단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3.1.21>

1.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개정 2013.1.21>
 2. 본인 명의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신설 2013.1.21>
 3. 항공권 영수증(INVOICE) 및 항공권 각 1부<신설 2013.1.21>
- ②외국국적 동포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다.<개정 2013.1.21>
- ③국내 연락처(핸드폰) 및 E-mail 정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 공지사항 대부분이 메일을 통해 전달됨을 감안, 국내에서 연락 불가능한 도메인(거주국 도메인, 예: “.ru, .163”) 사용 불가(hotmail, gmail 등 이용)<개정 2013.1.21>

제7조(보험 가입) ①초청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단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조치하며, 보험기간은 장학금 수혜 기간과 동일하다.

②보험가입 내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은 공지된 보험사에 문의한다.<신설 2012.2.13>

제8조(숙소) 장학생은 수학 대학에서 지정하는 숙소 또는 개별 숙소를

이용하며, 숙소 사용에 따른 경비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한다.<신설 2012.2.13>

제9조(항공료 지급) ①입국항공료는 최초 입국 시 1회 지급하고,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1회 지급한다.

②항공료 지급은 항공 INVOICE(영수증) 원본의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1. 거주국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의 실비를 지급하되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 (붙임 참조)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국내이동 및 국내이동항공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편도 항공권은 전액(100%) 지급하되 왕복 항공료는 반액(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자에게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1.21>

④귀국항공료는 제20조에 의거하여 귀국시 지급하며,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신청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1. 귀국신청서 1부<신설 2013.1.21>
2. 졸업증명서 1부<신설 2013.1.21>
3. 논문(석·박사 및 학사 해당자) 1부<신설 2013.1.21>
4. 귀국항공권 및 항공권 영수증 각 1부<신설 2013.1.21>

⑤불합격자 및 중도탈락자도 다음 서류 제출시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단, 자격상실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하며, 무단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3.1.21>

1. 귀국신청서 1부<신설 2013.1.21>
2. 장학생자격상실확인서 1부<신설 2013.1.21>

(붙임 6.)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2015년 2월

목 차

1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 1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1
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2
한국어연수과정의 연장	2
입학 지원	2
장학금 지급	3
제출 서류	4
신입생 준비서류	5
보험 가입	5
숙소	5
항공료 지급	6
등록	7
수강	7
성적 보고	7
성적 관리	7
휴학 신청	8
복학 및 신고	8
일시출국 신고	8
일시출국 기간	9

재입국 신고	9
귀국 신고	9
연락처 등 변경 신고	10
장학기간	10
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10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11
장학생 자격포기 및 장학금 반환	12
경고	13
주의	13
중요사항의 결정	14
준용규정	14
재단 행사참석 의무	14
소감문 작성 의무	15
학사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15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연락처	17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연락처	17

2 각종 양식 / 18

각종양식(일시출국신청서, 휴학/복학신청서, 교환학생 신청서, 귀국항공료신청서 등)	18
--	----

3 국외 항공요금 지급 기준 / 26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	26
----------------------	----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제정 2010.12.14. 지침 제15호
개정 2012. 2.13. 지침 제21호
개정 2013. 1.21. 지침 제40호
개정 2014. 1.28. 지침 제50호
개정 2015. 2.26. 지침 제7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일정기간(8개월 이하)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가 각 과정(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13>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②장학생은 어학연수 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며, 동 시험에서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 한다.<개정 2013.1.21>

③어학연수 불참자도 반드시 TOPIK 3급 이상의 성적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2년 이내 TOPIK 성적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개정 2013.1.21>

제2조의1(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①장학생은 어학연수기간 동안 출석을 95%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13>

제2조의2(한국어연수과정의 연장) ①당해연도 선발 장학생이 9월학기, 혹은 익년도 3월학기 대학진학 실패시, 익년도 9월학기 진학 희망자에 한해 어학연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단, 익년도 3월부터 8월말까지 장학생 신분 유지 및 어학연수 비용은 지원되나, 생활비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장이 승인된 장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하며, 익년도 9월학기 대학 진학 실패시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 한국어연수과정 연장자가 등록금면제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등록금면제자 선정심의회, 후순위로 고려한다.<신설 2014.1.28>

제3조(입학 지원) ①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는 장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재단으로 기제출한 서류는 입학 등의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대학 입학 관련 정보는 장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각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후 입학절차 진행해야한다.

2. 장학생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학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선택시에는 등록금 면제 혜택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문에 명시된 대학이라도 지방캠퍼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학교, 의학, 치의학, 건축학 등 4년을 초과하는 학과는 제외될 수 있으며, 면제인원보다 합격인원이 많은 경우에도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면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3. 재단 장학생의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등록금 면제 대상을 선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은 먼저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면제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은 합격한 대학의 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2.2.13>
 4.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학생회비, 입학금 등)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 ②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후 수석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3.1.21>

제4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어학연수과정 :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 ※ 어학연수 불참학생 및 어학연수 중도포기자는 생활비 지급 불가, 어학연수생의 일시출국으로 인한 생활비 차감은 제23조④에 의함.<신설 2012.2.13, 개정 2014.1.28>
 - 학부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4년간
 - 석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2년간
 - 박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3년간

- 석·박사 통합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대학별 수석연한 이내(단, 최대 4년간)
<신설 2015.2.26>

2. 지급시기 : 매월 5일
 3. 지급금액 : 월 90만원<개정 2012.2.13>
 4.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
 - ※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어학연수 위탁기관에서 지급
<신설 2012.2.13>
- ②최소소요경비는 최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첫 생활비 지급과 동시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3.1.21, 2014.1.28>
- ③논문 인쇄비(석·박사, 석·박사 통합과정)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 및 논문 제출자에 한해 1회 5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5.2.26>
1. 논문 인쇄비 지급 신청서 1부
 2. 논문 인쇄본 1부
- ④장학금의 지급 중지 : 제5조 및 6조에서 정한 개인별 서류의 미제출시 장학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5조(제출 서류)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

1. 입학 확정 시 : 입학이 확정된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합격증 원본 1부<개정 2012.2.13>
2. 매학기 종료 후
 - 가. 성적증명서 원본 1부(7월 20일 이전, 1월 20일 이전)<개정

2012.2.13>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9월 10일 이전, 3월 10일 이전, 선발년도부터 기재된 것)<개정 2012.2.13, 2013.1.21>

※ 일시출국자는 귀국 후 7일 이내 제출<신설 2012.2.13>

3. 휴학 후 재등록 시 : 재학증명서 1부

제6조(신입생 준비서류) ①신입 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입학 15일전까지 재단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3.1.21>

1.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개정 2013.1.21>
 2. 본인 명의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신설 2013.1.21>
 3. 항공권 영수증(INVOICE) 및 항공권 각 1부<신설 2013.1.21>
- ②외국국적 동포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다.<개정 2013.1.21>
- ③국내 연락처(핸드폰) 및 E-mail 정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 공지사항 대부분이 메일을 통해 전달됨을 감안, 국내에서 연락 불가능한 도메인(거주국 도메인, 예: “.ru, .163”) 사용 불가(hotmail, gmail 등 이용)<개정 2013.1.21>

제7조(보험 가입) ①초청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단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조치하며, 보험기간은 장학금 수혜 기간과 동일하다.

②보험가입 내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은 공지된 보험사에 문의한다.<신설 2012.2.13>

제8조(숙소) 장학생은 수학 대학에서 지정하는 숙소 또는 개별 숙소를

이용하며, 숙소 사용에 따른 경비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한다.<신설 2012.2.13>

제9조(항공료 지급) ①입국항공료는 최초 입국 시 1회 지급하고,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1회 지급한다.

②항공료 지급은 항공 INVOICE(영수증) 원본의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1. 거주국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의 실비를 지급하되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붙임 참조)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국내이동 및 국내이동항공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편도 항공권은 전액(100%) 지급하되 왕복 항공료는 반액(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자에게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1.21>

④귀국항공료는 제20조에 의거하여 귀국시 지급하며,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신청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1. 귀국신청서 1부<신설 2013.1.21>
2. 졸업증명서 1부<신설 2013.1.21>
3. 논문(석·박사 및 학사 해당자) 1부<신설 2013.1.21>
4. 귀국항공권 및 항공권 영수증 각 1부<신설 2013.1.21>

⑤불합격자 및 중도탈락자도 다음 서류 제출시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단, 자격상실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하며, 무단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3.1.21>

1. 귀국신청서 1부<신설 2013.1.21>
2. 장학생자격상실확인서 1부<신설 2013.1.21>

3. 귀국항공권과 항공권 영수증 각 1부<신설 2013.1.21>

⑥졸업자의 귀국항공료는 졸업 당해년도 2월 또는 8월에 일괄지급한다. 단, 귀국 전 장학금 계좌 해지 등으로 귀국항공료를 미리 받아야할 경우에는 출국 30일전까지 재단으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4.1.28>

제10조(등록) 장학생은 입학허가를 받은 수학대학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 장학생은 등록한 수학대학에서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제12조(성적 보고) 장학생은 매학기 종료 후 제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제13조(성적 관리) 각 학기별 학업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한 조건 <신설 2012.2.13>

①<삭제 2014.2.12>

②경고 :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학부과정은 85%미만(최초 1년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③주의 : 1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학부과정은 85%미만(최초 2학기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 계절학기 성적은 평가에 합산하지 않으나, 장학금 지급 제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평가

④등록금 면제 대학 입학자는 대학의 장학금 면제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제14조(휴학 신청) ①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질병, 본국 정부의 일시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2개월 전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

1. 휴학신청서 1부<개정 2013.1.21>

2.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개정 2013.1.21>

3. 입영통지서 1부(입대휴학의 경우에 한함)<신설 2013.1.21>

4. 지도교수의견서 1부(필요시)<개정 2013.1.21>

②재단의 승인 후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휴학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3.1.21>

③사전 승인 없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3.1.21>

④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15조<삭제 2013.1.21>

제16조(복학 및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복학 신청 후 장학생은 복학 처리 결과를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복학 후 재학증명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③복학 후 장학금 지급 개시는 3월, 9월로 정한다.<개정 2012.2.13>

제17조(일시출국 신고) ① 학기 중 해당 장학생은 한국에 체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부모사망,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출국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허락을 받아 출국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②장학생은 일시출국 10일전에 재단에 일시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 월 장학금은 지급 하지 않는다(단, 부모사망, 급성질병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일시출국은 예외)<개정 2012.2.13, 2013.1.21>

제18조(일시출국기간) ①일시출국기간은 1회 60일,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 수학대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 2014.1.28>

②일시출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23조에 의한다<개정 2012.2.13, 2013.1.21>

③한국어연수과정 기간 장학생은 일시출국을 불허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단, 개인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및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제19조(재입국 신고)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갖추어 재단에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 출입국사실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월 생활비 지급을 유예한다.<신설 2014.1.28>

제20조(귀국 신고) ①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전까지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1. 귀국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장학기간 종료 해당자는 불필요)

②학위과정자가 장학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학사는 6개월, 석사는 12개월, 박사는 18개월까지 귀국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장학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마다 귀국연기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③귀국신고자에게 이사장은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국항공료가 지원되지 아니한다.<신설 2013.1.21>

1. 취업, 결혼 등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신설 2013.1.21>

2. 무단귀국, 취업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신설 2013.1.21>

3. 귀국연기신고서 미제출자<신설 2013.1.21>

제21조(연락처 변경 신고) 주소지 또는 연락처나 여권, 학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7일 이내 재단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2.2.13>

제22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한국어연수과정(입학전 8개월) 외에 학부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별 수학연한에 준하며 최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5.2.26>

②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①일시출국일수가 학기당 30일을 초과

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으로 출국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생활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예 : 40일 출국시 30일 생활비 차감 감면으로 10일 생활비만 차감, 900,000원/30일×10일=300,000원 차감).<개정 2012.2.13, 2013.1.21, 2014.1.28>

②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제5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초과지급한 생활비는 장학생이 반납하거나 지급 재개시 차감한다.<신설 2013.1.21>

③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④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한국어연수기간(방학기간 포함) 중 일시출국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에 불참한 기간만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제24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2.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3.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기 중 무단 일시 출국하거나 한국어연수기관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한 자 또는 방학 중 무단 일시 출국이나 한국어연수기관 방학 기간 중 무단 일시 출국을 포함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12.2.13>
6.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

한 과목의 총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7.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8.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개정 2012.2.13>
9.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포기자)
10. <삭제 2014.1.28>
11.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는 85%미만으로(최초 1년 80%미만),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개정 2014.2.12>
12.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4.1.28>
13.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14. 취업을 하는 자<개정 2012.2.13>
15.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미제출자 또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
16. 등록금면제 협조 대학의 등록금 면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신설 2013.1.21>

② 1항의 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은 제27조(중요사항의 결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13, 개정 2014.1.28>

제24조의1(장학생 자격포기 및 장학금 반환) ①장학생은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중단 및 장학생 자격 포기 희망시, 2개월 전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신청한다.<신설 2015.2.26>

1. 장학생 자격포기 사유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
 3. 자격포기 사유 관련 증빙서류 1부
- ②재단에 사전 미통보, 무단 학업 중단 사유로 기지급된 생활비는 장학생이 즉시 반납하거나 귀국항공료 지급시 차감한다.

제25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

1.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출석률 95% 미만인 경우<개정 2012.2.13>
2. 방학 중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출국 하거나, 허가기간 내 통보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2.2.13>
3.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과정은 85%미만인 경우(최초 1년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4.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재단 경고 1회로 간주하되 당해 학년에 성적과 관련하여 이중경고 처분은 하지 않음<신설 2014.1.28>

제26조(주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주의 처분한다.<신설 2012.2.13>

1. 1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학부과정은 85%미만(최초 2학기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2. 제출서류(제 5조)를 사전 연락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락처 등의 변동사항을 재단에 알리지 않는 경우

제27조(중요사항의 결정) 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 경고 및 주의 부여,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인턴, 휴학,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등의 중요 사항은 내부결재를 통하여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4.1.28, 2015.2.26>

①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개정 2014.1.28>

1. 신청서
 2.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은 지도교수 및 소속대학장의 추천서
 3. 공공기관 해외인턴은 공공기관장의 추천서 및 해외인턴합격통지서
- ②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의 경우, 생활비를 지급치 아니한다.<신설 2014.1.28>
- ③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신청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2.26>
1.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및 소속대학장의 추천서 1부
 3.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증빙서류 1부

제28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생의 소속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29조(재단 행사참석 의무) ①장학생은 역사문화체험, 장학증서수여식 등 재단 공식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질병, 학사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 불참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②특히 역사문화체험의 경우, 1회 불참시 벌점 1점, 불참사유서 미제출시 벌점 2점, 총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 경고 처분한다.

③단, 지역별 장학생 네트워크 활동, 연말 봉사활동, 청소년초청연수 자원봉사요원, OKFriends 자원봉사단 등 재단 사업 참여시 별점 1점을 감면한다.<신설 2014.1.28>

제30조(소감문 작성 의무) 장학생은 장학기간 종료 전까지 모국 수학에 대한 소감문을 성실히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5.2.26>

제31조(학사관리시스템 활용 의무) 장학생은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기본정보(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성적 등) 등록, 각종 제출서류 등록(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학사관련 신청(휴·복학, 일시출국, 귀국연기 등), 졸업 후 근황 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신설 2015.2.26>

부칙<제15호, 2010.12.14>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호, 2012.2.13>

1. 이 지침은 '12.02.13부터 시행한다.
2. 다만, '09년도 이후 선발되어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장학생은 이 지침의 제13조 성적 관리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제40호, 2013.1.21>

1. 이 지침은 '13.01.21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23조 생활비 지급 규정은 2013.03.0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0호, 2014.1.28>

1. 이 지침은 2014.02.01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23조 생활비 지급 규정은 2014.03.0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0호, 2015.2.26>

1. 이 지침은 2015.02.26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연락처

- ① 담당자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 ② 주 소 : (우) 137-86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 ③ T e l : 02-3415-0173 / Fax 02-3415-0118 /
E-mail scholarship@okf.or.kr
- ④ 학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 [재단 방문] 재단방문시 3일전 미리 연락할 것

보험사(CHARTIS) 문의

- 나승옥 팀장, 010-3162-3454, seuok@korea.com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일시출국신고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일시출국 사유			
2. 출국기간, 여정			
출국기간	성 명		관 계
긴급	전화번호		
연락처	주 소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시된 기간 동안 출국하고자 하며, 출국기간 동안 본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 질 것을 서명합니다.

2015.

제출자 성명 (Name) : _____

제출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휴학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휴학사유(구체적으로 기술)			
2. 휴학기간(복학시점 반드시 명기)			
거주국 간접 연락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2015.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복학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복학사유			
2. 휴학기간(복학시점 반드시 명기)			
상기명 본인은 _____년도 __학기 복학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거주국 간접 연락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2015.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교환학생(해외인턴) 허가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사유(구체적으로 기술)			
2. 기간(프로그램 기간, 복귀시점, 학점인정여부 등 반드시 명기)			
거주국 긴급 연락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2015.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귀국연기신고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주소			
사유서			

신청자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귀국일을 6개월 연장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제출자 성명 (Name) : _____

제출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귀국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귀국사유	<input type="checkbox"/> 학위 취득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input type="checkbox"/> 중도포기		
수학과정	<input type="checkbox"/> 어학연수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박사통합		
수학학교/전공			
졸업논문명 (졸업년도)			
귀국예정일		귀국경로	한국(인천) →
귀국 후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주 소		
1. 수학 소감			
2. 수학 중 활동사항(논문발표, 특이사항 등)			

3. 귀국 후 활동계획
4. 건의 사항 및 의견

신청자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국하고자 귀국항공료를 신청합니다.

2015.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 (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모국수학 소감문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주소			
소감문(3페이지 내외)			

2015.

제출자 성명 (Name) : _____

제출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

2014. 4. 1. 현재, 개인 / 인천(ICN) / 대한항공 GTR 할인율 적용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기준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일 본	동 경	1,284,400	993,900	643,200	MLEKJ1
	오 사 카	1,088,200	847,200	554,800	MLEKJ
	후 쿠 오 카	-	672,800	439,900	MLEKJ
	삿 포 로	1,437,500	1,105,300	705,200	MLEKJ
	나 고 야	-	909,500	591,200	MLEKJ
	니 가 타	-	942,800	601,700	MLEKJ
	고 마 쓰	-	841,700	539,700	MLEKJ
	오 이 타	-	710,100	459,900	MLEKJ
	오 카 야 마	-	757,100	487,800	MLEKJ
	가 고 시 마	-	764,400	492,300	MLEKJ
중 국	베 이 징	1,337,700	965,100	715,500	MLKEC1
	상 하 이	1,274,300	921,400	684,300	MLKEC1
	선 양	1,023,800	831,900	620,800	MLKEC
	칭 다 오	960,500	782,200	585,500	MLKEC1
	정 저 우	-	1,026,800	762,100	MLKEC1
	창 사	-	1,201,400	883,500	MLKEC1
	다 련	-	766,900	574,600	MLKEC1
	광 저 우	1,650,900	1,323,300	970,300	MLKEC1
	지 난	-	906,400	673,800	MLKEC1
	쿤 밍	-	1,477,000	1,079,500	MLKEC1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무 단 장	-	957,000	709,800	MLKEC1
	선 전	1,683,000	1,348,500	988,200	MLKEC1
	텐 진	-	908,200	675,100	MLKEC1
	웨 이 하 이	-	766,000	573,900	MLKEC1
	우 한	-	1,147,600	845,300	MLKEC1
	샤 먼	-	1,201,400	883,500	MLKEC1
	시 안	-	1,238,300	909,800	MLKEC1
	엔 타 이	-	766,000	573,900	MLKEC1
몽 골	울란바타르	1,782,900	1,447,200	992,300	MEKS
타 이 완	타 이 페 이	1,159,200	952,300	633,000	MLEKS
홍 콩	홍 콩	2,013,000	1,390,100	897,900	MLEKC1
필 리 핀	마 닐 라	1,796,800	1,398,600	764,600	MLEKS1
태 국	방 콕	2,552,000	1,975,100	1,068,900	MLEKS1
베 트 남	호 치 민	-	1,844,600	1,001,400	MLEKS1
	하 노 이	2,431,100	1,840,300	997,100	MLEKS1
캄 보 디 아	프놈펜	-	1,938,200	1,052,000	MLEKS1
싱 가 폴	싱 가 폴	3,141,400	2,154,000	1,162,700	MLEKS1
말 레 이 시 아	쿠알라룸푸르	2,778,300	2,146,200	1,154,900	MLEKS1
인 도 네 시 아	자 카 르 타	3,521,500	2,397,400	1,272,000	MLEKS1
네 팔	카 트 만 두	-	2,590,600	1,757,300	MEKT1
인 도 네 시 아	뭄 바 이	3,582,900	2,660,200	1,792,700	MEKT1
오스트레일리아	시 드 니	5,913,500	4,004,300	2,657,000	MEEKR
	오 클 랜 드	6,055,000	4,042,400	2,658,300	MEEKR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브 리 즈 번	5,913,700	4,004,500	2,657,200	MEEKR
	멜 버 른	5,949,300	4,040,100	2,692,800	MLEKZ(SYD)
	캔 버 라	5,964,900	4,055,700	2,708,400	MLEKZ(SYD)
뉴 질 랜 드	웰 링 킨	6,066,400	4,053,800	2,669,700	MLEKZ(AKL)
미 국	호 놀 루 루	7,278,000	4,966,000	3,024,200	MLXEKA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10,018,600	6,335,700	3,386,300	MLXEKA
	시 애 틀	8,866,500	6,335,700	3,386,300	MLXEKA
	라스베가스	9,156,900	6,591,200	3,525,600	MLXEKA
	뱅 쿠 버	8,846,800	6,316,000	3,366,600	MLXEKA
	뉴욕, 워싱턴	11,959,900	7,639,900	4,471,600	MLXEKA
	아틀란타	11,959,900	7,639,900	4,471,600	MLXEKA
	시카고, 델러스	11,750,700	7,397,500	4,332,800	MLXEKA
캐 나 다	토 롬 토	10,251,900	7,784,400	4,445,900	MLXEKA
멕 시 코	멕 시 코 시 티	11,742,300	7,664,800	4,762,500	MLXEKA(LAX)
아르헨티나	부 에 노 스 아 이 레 스	21,830,800	13,043,300	6,864,500	MLXEKB(SAO)
브 라 질	리오데자네이루	22,563,700	13,303,200	7,220,900	MLXEKB(JFK)
	상 파 울 로	17,952,000	10,738,700	5,619,200	MLXEKB
아랍에미리트	두 바 이	4,953,600	3,401,500	2,150,000	MLEMKM
사우디아라비아	리 야 드	6,998,800	4,681,900	2,565,500	MLEMKM
이스라엘	텔 아 비 브	7,925,600	4,696,400	2,580,000	MLEMKM
프 랑 스	파 리	10,964,400	6,310,400	2,912,100	MLXEKU
영 국	런 던	11,197,900	6,543,900	3,145,600	MLXEKU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otted border and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otted border and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